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4가합55851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한국무역보험공사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4. 10. 21. (피고1., 2.)

2014. 11. 25. (피고 3.)

판결 선고2014. 12. 2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777,120원 및 그 중 173,173,960원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4. 9. 20.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의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5. 체결된 매매계약을 141,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141,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수출신용보증약정의 체결

-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4. 11. 신용보증한도액 1억 7,100만 원, 대출취급기관 중소기업은행, 보증기간 2013. 4. 19.부터 2014. 4. 18.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연 11%)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보전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 1) 피고 회사는 2010. 4. 26. 원고가 발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4. 3. 7.경 사업 포기 및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 2) 원고는 2014. 6. 23. 중소기업은행에 173,173,96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채권보전비용으로 603,160원을 지출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2013. 1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2,7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11. 22.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다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173,777,120원(대위변제금 중 173,173,960원 + 채권보전비용 603,16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73,173,96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4.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4. 9. 20.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 1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 회사가 2013. 4. 11.

수출보증신용약정을 체결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4개월 뒤인 2014. 3. 7.경 피고 회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신용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으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며, ③ 실제로 원고가 2014. 6. 23. 피고 회사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여부

갑 제7, 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수원시 권선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적극재산은 시가 2억 2,7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뿐인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844만원과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173,777,12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 및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을다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피고 C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며, 그 대표이사인 피고 B과 가족관계나 친분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을 알기 어려웠다.
-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상적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매매대금도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 ③ 피고 C은 'D'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관련 사업을 운영해왔고, 다수의 부동산, 예금 등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스스로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④ 피고 C은 매매대금 중 1,500만 원은 기존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같음하고, 나머지 2억 1,200만 원은 피고 회사에게 계좌이체하거나 수표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전액을 실제로 납부하였다. 그밖에 부가가치세,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부대비용도 피고 C이 모두 부담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연하

판사이지웅

판사장민하

별지